

目 次

1. 平昌郡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關한條例案
_____ 169
2. 平昌郡低所得住民生活安定基金融資條例중改正
條例案 _____ 188
3. 平昌郡決算檢査委員選任및運營에關한條例중
改正條例案 _____ 191
4. 平昌郡仲介業紛爭調整委員會運營條例案 — 196
5. 平昌郡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查에關한條例중
改正條例案 _____ 201
6. 1994年第2回平昌郡一般會計및特別會計追加
更正豫算案 _____ 205
7. 書面質問및 答辯書 _____ 107

평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181
----------	-----

제출년월일 : 1994. 9.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중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상해를 입을 경우 국회의원과 달리 보상규정이 없었으나
- '94. 3. 16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되었으며,
- '94. 7. 6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그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심의회를 두도록 하면서 법령에 규정된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 보상금의 청구, 지급 기준과 절차, 보상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보상금 지급대상과 직무 인정범위 (안 제3조)

- 직무로 인하여 사망·장애 또는 상해를 입은 의원
-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총무처 훈령)”
준용

나. 보상금 지급기준 (안 제4조)

- 사망 - 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 상당액
- 장애 - 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 상당액
- 상해 - 치료비 전액(장애보상금 최고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 불가)

다. 보상금 청구권자 및 청구기간 (안 제5조)

- 사망 - 사망시 유족
- 장애·상해 -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 보상금 청구는 사망일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으로 청구(기간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가 보상심의회에서 인정되면 가능)
- 군수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보상심의회에 회부

라. 보상금의 지급방법 (안 제6조)

- 일시불로 지급하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경우 분할 지급 가능

마. 위원의 임기 (안 제7조) : 2년

바. 위원장의 직무 (안 제8조)

-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 통할
- 위원장 사고시 위원중에서 호선, 위원장 직무 대행

사. 보상심의회 회의 (안 제9조)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보상심의회는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심의하고 결과 통보.
다만, 보상금 청구 경위조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15일의 범위안에서 심의기간 연장

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경비 지급 (안 제11조)

평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직무상 사망·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 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라 함은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일비"라 함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등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4.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해"라 함은 장애의 경우를 제외한 상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총무처훈령)을 준용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 상당액에 다음 각목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 가. 1급은 100분의 100
 - 나. 2급은 100분의 95
 - 다. 3급은 100분의 90
 - 라. 4급은 100분의 85
 - 마. 5급은 100분의 80
 - 바. 6급은 100분의 75
 - 사. 7급은 100분의 70
 - 아. 8급은 100분의 65
 - 자. 9급은 100분의 60
 - 차. 10급은 100분의 55
 - 카. 11급은 100분의 50
 - 타. 12급은 100분의 45
 - 파. 13급은 100분의 40
 - 하. 14급은 100분의 35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 가목의 보상금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보상금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2호의 경우에는 장애나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권자가 평창군의회의회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영제15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간내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2항의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보상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인과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보상심의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때에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보상심의회 위원장은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며,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보상심의회 회의) ①위원장은 보상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보상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보상심의회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안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보상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1조(수당 등)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은 그 지급 사유가 1994년 3월 16일 이후 발생한 것부터 지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傷害 · 死亡등의 보상) ①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 직무 (제5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폐회중의 공무여행을 포함 한다) 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53조 (위원회의 개최) 위원회는 회기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일비와 여비의 지급)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의 지급기준은 별표4,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5 및 별표6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별표 4] 지방의회 의원 일비지급 범위

구 분	일비지급범위
시·도의회 의원	60,000 원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원	50,000 원

제15조의2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손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법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도의회 의원 일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도의회 의원 일비의 1년분 상당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②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 (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해 지방의회의원 1인
2.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

④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⑤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 (폐질상태의 정도구분)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 급여의 폐질상태의 정도 구분(이하 “폐질등급”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제2급 내지 제10급에 해당하는 폐질이 2개부위 이상인 때에는 그중 중한 폐질 2개에 대하여 별표에 의한 각각의 부위별 폐질등급을 정한후 그 폐질등급에 따라 별표3에 의하여 종합 폐질등급을 결정한다.

[별표 2]

폐질등급(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 관련)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2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3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4급

1. 두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는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5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6급

1. 두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두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다섯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7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이상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다섯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하게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제8급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 못쓰게 되거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이상이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개 관절중 1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

제9급

1. 두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4. 두 눈에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사람
10.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
1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
1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었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14.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을 잃은 사람
15. 한 발의 발가락 모두가 못쓰게 된 사람
16.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제10급

1.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두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
5.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외의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세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 다리가 3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제11급

1. 두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10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6.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7.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8.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 손의 둘째손가락이 못쓰게 되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두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이상이 못쓰게 된 사람
11. 흉복부장기에 장애가 남은 사람

제12급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쇠골·용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팔과 다리의 긴뼈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의 세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네 발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완전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제13급

1.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손가락뼈사이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한 발가락 또는 두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의 세 발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제14급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한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중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중 손가락뼈사이 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발가락중 한 발가락이상이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비고 : 이 표에 있어서의 시력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 별표 3 】

2이상 폐질상태에 대한 종합폐질등급표 (제45조)

폐질등급(1) 폐질등급(2)	10	9	8	7	6	5	4	3	2
10	9	8	7	6	5	4	4	3	2
9	8	7	6	5	5	4	3	3	2
8	7	6	6	5	4	4	3	3	2
7	6	5	5	4	4	3	3	2	2
6	5	5	4	4	4	3	3	2	1
5	4	4	4	3	3	3	3	2	1
4	4	3	3	3	3	3	2	2	1
3	3	3	3	2	2	2	2	1	1
2	2	2	2	2	1	1	1	1	1

(주) 폐질등급(1)에 해당하는 등급과 폐질등급(2)에 해당하는 등급이 상호 만나는 난의 등급을 종합폐질등급으로 한다.

(예) 폐질등급이 7급과 8급에 해당하는 2개부위의 폐질상태에 있는 자는 이표에 의하여 종합폐질등급이 5급으로 된다.

공무상재해인정기준 (1981. 5. 12 총무처훈령 제94호 전문개정)

1991. 6. 21 총무처훈령제153호 개정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사항인 공무상 부상·질병·역질 및 사망 (이하 "공무상재해"라 한다)에 관한 인정기준을 정함으로써 공무상요양 급여·장해 급여 및 유족보상금 지급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무상재해의 인정범위) 공무상재해라 함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담당업무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가. 고유업무 또는 당직·출장등 임시로 부여된 직무수행중 발생한 재해
 - 나. 직무수행에 통상 수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수행중 발생한 재해
 - 다. 근무장소에서 재해를 당한 직원을 구조하는 행위중 발생한 재해
 - 라. 비상재해시에 근무장소 또는 그 부속시설을 방호하는 행위중 발생한 재해
 - 마. 공무상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

2.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가. 근무시간의 시작전, 휴식시간중 또는 종료후의 공무수행에 필요한 준비행위 또는 정리행위중 발생한 재해

나.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 다만, 순리적인 경로 또는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경우 제외

다. 출장 또는 부임기간중 발생한 재해. 다만, 순리적인 경로 또는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경우 제외

라. 체육대회, 식수행사등 직장의 공적 행사중 발생한 재해

3. 근무상황적요인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

가. 분진, 광선, 유해물질등 근무장소의 환경적조건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

나. 근무장소 또는 그 부속시설의 설비의 불안전 또는 관리상의 부주의 기타 소속부서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

다. 공무수행상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숙사의 불안전 또는 관리상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

라. 공무수행장소의 숙소여건, 지역

적특성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다. 건강진단, 예방접종등 건강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근무기관에서 취한 조치에 따라 발생한 재해

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집단적으로 제공된 음식물에 의한 재해

사. 공무수행에 따른 원한등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

아. 공무수행중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4. 공무상의 과로 및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가. 질병의 원인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자가 공무상의 과로 및 부상에 의하여 발병한 경우

나. 질병의 원인은 있었지만 발병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던 자가 공무상의 과로 및 부상에 의하여 그 원인이 자극되어 발병한 것이 명백한 경우

다. 이미 발병하고 있었던 자가 공무상의 과로 및 부상에 의하여 그 질병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라. 공무상 질병·부상의 치료에 따라 새로이 발생한 재해

5. 기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포괄적인 의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제3조(공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공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순수한 사적행위로 인한 재해

2. 등우를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

가. 근무지를 무단이탈 또는 사적용무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

나. 출·퇴근시 거주지와 근무지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

다. 순리적인 출장경로, 귀로를 이탈하거나 본래의 출장목적을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

라. 공무수행중 상호폭력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3. 의학적으로 당해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없이 본인의 신체적조건이나 생활환경 또는 습관에서 발생·악화된다고 판단되는 질병

제4조(중대한 과실의 적용제한) 중대한 과실의 적용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1. 불가피한 사유없이 관계법령 또는 안전수칙등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실 8개항등)

2. 공무수행중이라도 음주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경합되어 재해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단순한 과실이나 부주의가 아닌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부 칙

이 훈령은 198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훈령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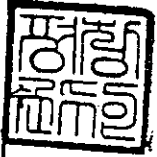
평창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79 호
----------	---------

제출년월일 : 1994. 7.

제 출 자 : 평 창 군

이경호



1. 제안이유

- '91. 1. 7 조례 제1329호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의 제명이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각 조문중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조문중 "영세민"을 "저소득주민"로 개정함. (조례안 제1조, 제2조 및 제3조 제1항5호)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및 제3조제1항제5호중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활의욕이 강하면 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활 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영세민" 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용자기금(이하"기금" 이라 한다)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금구성)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금을 조성한다. 다만 "영세민" 생활 안정 등 기타 사업에 따른 찬조금 수입도 이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p> <p>제3조(용자대상) ① (생략)</p> <p>1. (생략)</p> <p>2. (생략)</p> <p>3. (생략)</p> <p>4. (생략)</p> <p>5. "영세민" 자활소득단지 참여가구의 사업자금. 다만, 자활소득단지는 고등 채소, 특용작물재배, 버섯재배, 양봉, 한우, 양돈, 양계, 흑산양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p> <p>6. (생략)</p> <p>② (생략)</p>	<p>제1조(목적)</p> <p>.....</p> <p>..... <u>"저소득주민"</u> ..</p> <p>.....</p> <p>.....</p> <p>.....</p> <p>제2조(기금구성).....</p> <p>..... <u>"저소득주민"</u> ...</p> <p>.....</p> <p>.....</p> <p>제3조(용자대상)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5. <u>"저소득주민"</u></p> <p>.....</p> <p>.....</p> <p>.....</p> <p>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평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3
----------	-----

제출년월일 : 1994. 9.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 안 이 유

1994년 7. 6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입법취지에 맞게 조정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및 여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결산검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 요 골 자

가.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3인이내"에서 "3인이상 5인이내"로 조정함
(안 제2조).

나. 군수가 추천하는 위원을 1인에서 2인으로 함(안 제3조제1항).

다. 위원의 일비를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함(안 별표1).

라. 위원의 여비를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 5] 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조정함.
(안 별표1).

3. 참 고 사 항

○. 관계법령(지방자치법시행령) : 따로붙임

평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3인이내"를 "3인이상 5인이내"로 한다.

제3조중 "1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2명은 군수가" 로 한다.

[별표 1]중 "액수"를 "지급액"으로 하고 일비 "30,000원"을 "50,000원"으로 하며, 여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금액을 적용하되
군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은 군의원에 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위원의정수) <u>위원의 정수는 3인이내로 한다.</u></p> <p>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u>위원중 1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u></p> <p>② ~ ⑤ (생략)</p> <p>[별표 1]</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u>액 수</u></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 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u>30,000원</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여 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 <u>국내여비규정</u> <u>"별표1" 여비지급</u> <u>구분표상의 부군수</u> <u>상당액</u> </td> </tr> </tbody> </table>	구 분	<u>액 수</u>	일 비	<u>30,000원</u>	여 비	<u>국내여비규정</u> <u>"별표1" 여비지급</u> <u>구분표상의 부군수</u> <u>상당액</u>	<p>제2조(위원의정수) <u>3인이상 5인이내</u></p> <p>제3조(선임방법및절차)① <u>2명은 군수가</u></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별표 1]</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u>지 급 액</u></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 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u>50,000원</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여 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 <u>지방자치법시행령</u> <u>[별표 5] 에서</u> <u>정하는 금액을 적용</u> <u>하되 군의원이 아닌</u> <u>검사위원은 군의원에</u> <u>준한다.</u> </td> </tr> </tbody> </table>	구 분	<u>지 급 액</u>	일 비	<u>50,000원</u>	여 비	<u>지방자치법시행령</u> <u>[별표 5] 에서</u> <u>정하는 금액을 적용</u> <u>하되 군의원이 아닌</u> <u>검사위원은 군의원에</u> <u>준한다.</u>
구 분	<u>액 수</u>												
일 비	<u>30,000원</u>												
여 비	<u>국내여비규정</u> <u>"별표1" 여비지급</u> <u>구분표상의 부군수</u> <u>상당액</u>												
구 분	<u>지 급 액</u>												
일 비	<u>50,000원</u>												
여 비	<u>지방자치법시행령</u> <u>[별표 5] 에서</u> <u>정하는 금액을 적용</u> <u>하되 군의원이 아닌</u> <u>검사위원은 군의원에</u> <u>준한다.</u>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시행령 >

제46조 (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인 이상 10인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그 정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4]

지방의회의원 일비지급범위(제15조 관련)

구 분	일비지급범위
시·도의회의원	6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50,000원 이내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범위(제15조관련)

(단위 : 원)

구분		지급 기준액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시·도	의장·부의장	1등급	2등급정액	정액	정액	정액	6,500	20,700	11,000
	의원	1등급	2등급정액	정액	정액	정액	6,500	20,700	11,000
시·군·자치구	의장·부의장	1등급	2등급정액	정액	정액	정액	6,500	20,700	11,000
	의원	2등급	2등급정액	정액	정액	정액	6,500	16,200	10,500

〈 비 고 〉

1. 의회소재지내에서 출석 및 여행(동일 특별시·직할시·시 또는 군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 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평창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180
----------	-----

제출년월일 : 1994. 8.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제안이유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군조례로 정하여 부동산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의 심사·조정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1.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
 - 위원장 사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2.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공무원이 아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3. 위원의 해촉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 위원회의 분쟁심사 . 조정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등을 누설할 때
 - 위원회의 분쟁심사 . 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위원이 사망·질병·부상·이주(전출)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4. 회의소집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등을 회의 7일전까지 서면 통지
 -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전일까지 구두 통지
5. 회의록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2인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
6. 위원회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둠
 - 간사는 업무담당계장,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됨
7. 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평창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등) ①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분쟁심사·조정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등을 누설할 때
3. 위원회의 분쟁심사·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위원이 사망·질병·부상·이주(전출)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촉하고 새로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소집 등)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등을 회의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전일까지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제6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2인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업무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취 서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①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하여 허가관청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자가 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부동산 관계 분야를 전공한 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시·군 또는 구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자
 4. 부동산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93. 12. 27)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182
번호	

제안년월일 : 1994. 9. .

발의자 : 김낙운 의원의 6명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이 개정('94. 3. 16)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94. 7. 6 대통령령 제14,317호) 공포됨에 따라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과 일치 시키기 위함.

2. 주요골자

-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정기회중 3일 이내에서 7일의 범위이내로 조정함.
(안 제2조 ② 항)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②항중 "3일이내"를 "7일의 범위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2조(감사)①(생략)</p> <p>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u>3일이내</u>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 의 승인을 얻은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p> <p>③ (생 략)</p> <p>④ (생 략)</p> <p>⑤ (생 략)</p>	<p>제2조(감사)①(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u>7일의범위내</u>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 의 승인을 얻은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시·군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의 각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수 있다.

1994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안 번호	185
----------	-----

제출년월일 : 94. 10.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수요의 능동적인 지원은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요구합니다.

2. 제안주요내용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요구액은 총 1,935백만원으로 일반회계 △6백만원과 특별회계 1,941백만원이며

(세 입)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1,170백만원, 지방교부세 1,063백만원, 보조금 101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30백만원, 사업외수입 411백만원, 보조금 1,500백만원입니다.

(세 출)

일반회계의 편성은 인건비 △432백만원, 물건비 △83백만원, 이전경비 163백만원, 자본지출 499백만원, 자치단체 내부거래 △230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7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물건비 154백만원, 이전경비 68, 자본지출 1,650백만원, 용자 및 출자 78백만원, 보전재원 19백만원, 기타 △2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년도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994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안)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평 창 군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액	구성비율(%)	전년도(기정) 예산액	구성비율(%)	증△감	예산액	구성비율(%)	전년도(기정) 예산액	구성비율(%)	증△감	예산액	구성비율(%)	전년도(기정) 예산액	구성비율(%)	증△감	
세입	계	55,104,649	100%	53,169,207	100%	1,935,442	49,815,343	100%	49,820,743	100%	-5,400	5,289,306	100%	3,348,464	100%	1,940,842
	지방세	6,038,550	11%	6,038,550	11%	0	6,038,550	12%	6,038,550	12%	0	0	0%	0	0%	0
	서외수입	7,650,206	14%	8,379,146	16%	-728,940	4,899,800	10%	6,069,582	12%	-1,169,782	2,750,406	52%	2,309,564	69%	440,842
	경상직서외수입	3,621,101	7%	4,179,678	8%	-558,577	2,483,128	5%	3,071,705	6%	-588,577	1,137,973	22%	1,107,973	33%	30,000
	입시직서외수입	4,029,105	7%	4,199,468	8%	-170,363	2,416,672	5%	2,997,877	6%	-581,205	1,612,433	30%	1,201,591	36%	410,842
	지방교부세	20,640,561	37%	19,578,000	37%	1,062,561	20,640,561	41%	19,578,000	39%	1,062,561	0	0%	0	0%	0
	지방양여금	4,506,207	8%	4,506,207	8%	0	4,506,207	9%	4,506,207	9%	0	0	0%	0	0%	0
	보조금	15,719,125	29%	14,117,304	27%	1,601,821	13,430,225	27%	13,328,404	27%	101,821	2,288,900	43%	788,900	24%	1,500,000
	국고보조금	7,145,675	13%	6,227,184	12%	918,491	5,959,875	12%	5,791,384	12%	168,491	1,185,800	22%	435,800	13%	750,000
	도비보조금	8,573,450	16%	7,890,120	15%	683,330	7,470,350	15%	7,537,020	15%	-66,670	1,103,100	21%	353,100	11%	750,000
지방채	550,000	1%	550,000	1%	0	300,000	1%	300,000	1%	0	250,000	5%	250,000	7%	0	
세출	계	55,104,649	100%	53,169,207	100%	1,935,442	49,815,343	100%	49,820,743	100%	-5,400	5,289,306	100%	3,348,464	100%	1,940,842
	인건비	9,495,969	17%	9,927,535	19%	-431,566	9,484,809	19%	9,916,375	20%	-431,566	11,160	0%	11,160	0%	0
	물건비	7,175,766	13%	7,105,324	13%	70,442	6,266,852	13%	6,350,323	13%	-83,471	908,914	17%	755,001	23%	153,913
	이전경비	5,386,109	10%	5,155,344	10%	230,765	4,542,574	9%	4,379,803	9%	162,771	843,535	16%	775,541	23%	67,994
	자본지출	31,071,309	56%	28,922,021	54%	2,149,288	28,360,569	57%	27,861,281	56%	499,288	2,710,740	51%	1,060,740	32%	1,650,000
	융자및출자	350,172	1%	272,663	1%	77,509	0	0%	0	0%	0	350,172	7%	272,663	8%	77,509
	보전채원	773,851	1%	754,431	1%	19,420	392,384	1%	392,384	1%	0	381,467	7%	362,047	11%	19,420
	내부거래	45,501	0%	275,501	1%	-230,000	45,501	0%	275,501	1%	-230,000	0	0%	0	0%	0
	기타	195,244	0%	193,441	0%	1,803	151,606	0%	146,052	0%	5,554	43,638	1%	47,389	1%	-3,751
	예비비	610,728	1%	562,947	1%	47,781	571,048	1%	499,024	1%	72,024	39,680	1%	63,923	2%	-24,243

예 산 총 칙

1994 년도 [2회추경]

• 제1조 :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 예산총액	일시차입 한도액
총 계	55,104,649	1,653,139
일반회계	49,815,343	1,494,460
특별회계	5,289,306	158,67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303,099	99,092
주택사업특별회계	939,877	28,196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57,043	16,711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특별회계	279,177	8,375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71,795	2,153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138,315	4,149

- 제2조 : 세입·세출예산의 명칭은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3조 : 1994년도 치무부담행위는 별첨 '치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4조 : 1994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550 백만원으로 한다.
- 제5조 : 199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 제6조 : 1994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
- 제7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571,048천원으로한다.

예 산 총 규 모

(단위 : 천원)

구 분 회 계 별	예 산 액	전 년 정 도 (기 산 액)	증 △ 감
계	55,104,649	53,169,207	1,935,442
일 반 회 계	49,815,343	49,820,743	-5,400
특 별 회 계	5,289,306	3,348,464	1,940,842
상 수 도 사 업	3,303,099	1,503,099	1,800,000
주 택 사 업	939,877	939,877	0
의 료 보 호 기 금	557,043	557,043	0
새마을소득 금고 운영 관리	279,177	201,068	78,109
영세민생활안정기금	71,795	71,795	0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138,315	75,582	62,733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 사업	0	0	0
공유 임야 관리 사업	0	0	0
지방 양여금 사업	0	0	0

審 查 報 告 書

1994年 10月 13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

1 . 審查經過

가. 提出日字 및 提出者 : 1994年度 10月 4 日, 平昌郡守

나. 回 附 日 字 : 1994年度 10月 11日

다. 上 程 日 字 : 第25回 平昌郡議會(臨時會)

○ 第1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 '94. 10. 11. 上程

○ 第3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 '94. 10. 13. 議決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 企劃室長 高昶植)

- 1994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53,169백만원의 3.6%인 1,935백만원이
증가한 55,104 백만원이며,
-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대비 6백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
회계는 1,941 백만원이 증가하였음.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要旨

(專門委員 辛敎善)

가. 一般會計 歲入部門

○ 세외수입의 증감요인으로

- . 황계수해주택집단이주연립 분양수입은 94년 제1회 추경에 계상하여 미분양시 세수결함이 예상된다는 검토가 있었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금회 추경에 6억3,949만 7천원을 삭감함은 당초에 사업의 타당성이나 충분한 사업계획의 검토없이 세입으로 계상하였다고봄.
- . 폐천부지매각수입 6억3,949만7천원을 삭감 조정 한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세수결함을 예상 한것이나, 이는 사전에 사업검토의 미흡으로 인한 결과로 사료됨.

○ 지방교부세 10억6,256만1천원중

- . 특별교부세 5억5천만원은 황계시가지 진입로 확포장및 달동네 정비 사업으로 3억원이 내시확정되었으나, 임하교 가설사업2억5천만원은 전언통보에 의거 계상하였음.
- . 중액교부금 5억1,256만1천원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로 내시되었음.

나. 一般會計歲出部門

- 금회추경규모는 감액예산으로 인건비 4억 3,156만6천원,물건비 8,437만원을 감하여 기타 경비로 편성하였으며, 총540만원을 감액편성되었음.
- 일반행정비는 인건비 예산잔액을 감액 처리하고 연금부담금,퇴직수당부담금, 예비비등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총4억 7,350만원이 감액되었음.

- 산업경제비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비 총 38억6,200만원중 국·도비 보조 13억5,170만원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으나, 군비부담 5억7,930만원중 금회추경에 2억원이 계상되었음.

다. 特別會計歲入部門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58%가 증액된 19억4,08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중 상수도특별회계가 18억원으로 내역별로보면 상수도 사용료수입에 3,000만원이 증액되고 일반회계전입금 2억3,0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봉평상수도시설 확장공사의 (주)보광 부담금 25억원중 금회 추경에 5억원이 부담되었음.
진부상수도시설 확장공사에 국고보조(농특세)7억5,000만원, 도비보조금 7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음.

나. 特別會計歲出部分

- 평창군 상수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5,000만원과 관광휴양시설지구인면은,무이지구와 장평,백옥포 지구의 청소년수련마을 조성으로 물수요 급증에 따른 시설확장이 시급한 봉평상수도 확장공사비 48억원중 금년도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진부상수도는 송정택지개발지구및 고층건물건립등으로 상수원이 절대 부족한 진부,월정상수도를 통합운영하기위한 상수도확장 사업비가 50억원 소요 되나 금년도에 15억원이 계상되었음.

4. 質疑, 答辯要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 주 태 원 ></p> <p>○ 세입증 폐천부지매각 639,497천원과 횡계수해주택 집단이주연립주택분양수입 641,680천원을 감하게 된 이유?</p>	<p>< 재무과장 ></p> <p>○ 당초예산편성시 세입을 예측하여 편성하였으나 그간 여건의 변동이 생겨 감하게 되었음.</p>
<p>< 김 낙 운 ></p> <p>○ 세출예산중 대부분의 사업에 감액사유가 발생하는데 예산질서를 무시한 예산편성사유는?</p>	<p>< 기획실장 ></p> <p>○ 당초계획한 사업의 변경과 실행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다수 발생된것으로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p>
<p>< 주 태 원 ></p> <p>○ 금년초 도비지원사업인 장평농촌오수처리장 공사 1,500만원, 소규모 소각로설치 2,000만원등 다수사업이 금회에 도비부담액을 군비에서 부담케된 이유는 ?</p>	<p>< 환경보호과장 ></p> <p>○ 당초 도의 가내시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비 확정시 내시 사업비가 감액됨에 따라 기 발주된 사업임으로 군비로 대체하게 되었으며, 금후 예산편성에 걱정을 기하겠음.</p>

5. 討論要旨

(없 음)

6. 小委員會 審査報告 要旨

가. 소위원회위원 : 주태원위원, 곽문춘위원, 김낙운위원

나. 심사결과보고 : 주 태 원위원

다. 주 요 요 지 : 원안의결

7. 修正案의 要旨

(없 음)

8. 審査結果

(원안가결)

9. 少數意見 要旨

(없 음)

10. 其他必要한 事項

(없 음)

- 첨부 : 1. 1994년도 제2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부.
2. 1994년도 제2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1부. 끝.

1994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94. 10. 13.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수요의 능동적인 지원은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4년도 제2회 평창군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요구하였으나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2. 제안주요내용

199년도 제2회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의결요구액은 총 1,935백만원으로 일반회계 △ 6백만원과 특별회계 1,941백만원이며

(세 입)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1,170백만원, 지방교부세 1,063백만원, 보조금 101백만원으로 되어있고,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30백만원, 사업외수입 411백만원, 보조금 1,500백만원입니다.

(세 출)

일반회계의 편성은 인건비 △432백만원, 물건비 △83백만원, 이전경비 163백만원, 자본지출 489백만원, 자치단체 내부거래 △230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8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물건비 154백만원, 이전경비 68, 자본지출 1,650백만원, 용자 및 출자 78백만원, 보전재원 19백만원, 기타 △2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94년도 (제2회추경 수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평 창 군

에 산 중 처

1994 년도 [2회추경]

• 제1조 :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 예산총액	일시차입 한도액
총 계	55,104,649	1,653,139
일반회계	49,815,343	1,494,460
특별회계	5,289,306	158,67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303,099	99,092
주택사업특별회계	939,877	28,196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57,043	16,711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특별회계	279,177	8,375
영서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71,795	2,153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138,315	4,149

- 제2조 :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3조 : 1994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4조 : 1994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550 백만원으로 한다.
- 제5조 : 199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 제6조 : 1994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
- 제7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581,048 천원으로한다.

예산총규모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별	예산액	전년도 (기정) 예산액	증△감
계	55,104,649	53,169,207	1,935,442
일반회계	49,815,343	49,820,743	-5,400
특별회계	5,289,306	3,348,464	1,940,842
상수도사업	3,303,099	1,503,099	1,800,000
주택사업	939,877	939,877	0
의료보호기금	557,043	557,043	0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	279,177	201,068	78,109
영세민생활안정기금	71,795	71,795	0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138,315	75,582	62,733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 사업	0	0	0
공유 임야 관리 사업	0	0	0
지방양여금사업	0	0	0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예산액	구성 비율 (%)	전 년 도 (기 정) 예산액		증 △ 감	예산액	구성 비율 (%)	전 년 도 (기 정) 예산액		증 △ 감	예산액	구성 비율 (%)	전 년 도 (기 정) 예산액		증 △ 감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예산액
세 입	계	55,104,649	100%	53,169,207	100%	1,935,442	49,815,343	100%	49,820,743	100%	-5,400	5,289,306	100%	3,348,464	100%	1,940,842
	지방세	6,038,550	11%	6,038,550	11%	0	6,038,550	12%	6,038,550	12%	0	0	0%	0	0%	0
	세외수입	7,650,206	14%	8,379,146	16%	-728,940	4,899,800	10%	6,069,582	12%	-1,169,782	2,750,406	52%	2,309,564	69%	440,842
	경상적세외수입	3,621,101	7%	4,179,678	8%	-558,577	2,483,128	5%	3,071,705	6%	-588,577	1,137,973	22%	1,107,973	33%	30,000
	임시적세외수입	4,029,105	7%	4,199,468	8%	-170,363	2,416,672	5%	2,997,877	6%	-581,205	1,612,433	30%	1,201,591	36%	410,842
	지방교부세	20,640,561	37%	19,578,000	37%	1,062,561	20,640,561	41%	19,578,000	39%	1,062,561	0	0%	0	0%	0
	지방양여금	4,506,207	8%	4,506,207	8%	0	4,506,207	9%	4,506,207	9%	0	0	0%	0	0%	0
	보조금	15,719,125	29%	14,117,304	27%	1,601,821	13,430,225	27%	13,328,404	27%	101,821	2,288,900	43%	788,900	24%	1,500,000
	국교보조금	7,145,675	13%	6,227,184	12%	918,491	5,959,875	12%	5,791,384	12%	168,491	1,185,800	22%	435,800	13%	750,000
	도비보조금	8,573,450	16%	7,890,120	15%	683,330	7,470,350	15%	7,537,020	15%	-66,670	1,103,100	21%	353,100	11%	750,000
지방채	550,000	1%	550,000	1%	0	300,000	1%	300,000	1%	0	250,000	5%	250,000	7%	0	
세 출	계	55,104,649	100%	53,169,207	100%	1,935,442	49,815,343	100%	49,820,743	100%	-5,400	5,289,306	100%	3,348,464	100%	1,940,842
	인건비	9,495,969	17%	9,927,535	19%	-431,566	9,484,809	19%	9,916,375	20%	-431,566	11,160	0%	11,160	0%	0
	물건비	7,175,766	13%	7,105,324	13%	70,442	6,266,852	13%	6,350,323	13%	-83,471	908,914	17%	755,001	23%	153,913
	이전경비	5,386,109	10%	5,155,344	10%	230,765	4,542,574	9%	4,379,803	9%	162,771	843,535	16%	775,541	23%	67,994
	자본지출	31,061,309	56%	28,922,021	54%	2,139,288	28,350,569	57%	27,861,281	56%	489,288	2,710,740	51%	1,060,740	32%	1,650,000
	융자및출자	350,172	1%	272,663	1%	77,509	0	0%	0	0%	0	350,172	7%	272,663	8%	77,509
	보건재원	773,851	1%	754,431	1%	19,420	392,384	1%	392,384	1%	0	381,467	7%	362,047	11%	19,420
	내부거래	45,501	0%	275,501	1%	-230,000	45,501	0%	275,501	1%	-230,000	0	0%	0	0%	0
	기타	195,244	0%	193,441	0%	1,803	151,606	0%	146,052	0%	5,554	43,638	1%	47,389	1%	-3,751
	예비비	620,728	1%	562,947	1%	57,781	581,048	1%	499,024	1%	82,024	39,680	1%	63,923	2%	-24,243

'94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

[2회추경]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 예산액	구성비	중 △ 감
합 계		49,815,343	100.0	49,820,743	100.0	△ 5,400
세	지방세수입	6,038,550	12.1	6,038,550	12.1	0
	세외수입	4,899,800	9.8	6,069,582	12.2	△ 1,169,782
	경상적계외수입	2,483,128	5.0	3,071,705	6.2	△ 588,577
	임시적계외수입	2,416,672	4.9	2,997,877	6.0	△ 581,205
입	지방교부세	20,640,561	41.4	19,578,000	39.3	1,062,561
	지방교부세	20,640,561	41.4	19,578,000	39.3	1,062,561
	지방양여금	4,506,207	9.0	4,506,207	9.0	0
	지방양여금	4,506,207	9.0	4,506,207	9.0	0
	조정교부금	0		0		0
	조정교부금	0		0		0
	보조금	13,430,225	27.0	13,328,404	26.8	101,821
	국고보조금	5,959,875	12.0	5,791,384	11.6	168,491
	도비보조금	7,470,350	15.0	7,537,020	15.1	△ 66,670
	지방채	300,000	.6	300,000	.6	0
	국내차입금	300,000	.6	300,000	.6	0
	국외차입금	0		0		0
	융자금수입	0		0		0

구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 예산액	구성비	증 △ 감
시	인건비	9,484,809	19.0	9,916,375	19.9	△ 431,566
	물건비	6,266,852	12.6	6,350,323	12.7	△ 83,471
	이전경비	4,542,574	9.1	4,379,803	8.8	162,771
	자본지출	28,350,569	56.9	27,861,281	55.9	489,288
출	용자및출자	0		0		0
	보전계원	392,384	.8	392,384	.8	0
	내부거래	45,501	.1	275,501	.6	△ 230,000
	예비비가타	732,654	1.5	645,076	1.3	87,578

'94 일반회계세출예산

[2회추경] 기능별 -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 감	
합 계		49,815,343	49,820,743	△ 5,400	
1000	의회비	398,033	394,415	3,618	
	1200	의회운영비	398,033	394,415	3,618
2000	일반행정비	15,653,376	16,111,879	△ 458,503	
	2100	기획관리비	8,723,991	9,282,469	△ 558,478
	2200	공보비	171,600	158,100	13,500
	2300	내무행정비	5,558,675	5,454,403	104,272
	2400	재무행정비	1,199,110	1,216,907	△ 17,797
3000	사회복지비	5,585,522	5,451,510	134,012	
	3100	복지사업비	1,612,119	1,607,892	4,227
	3200	보건위생비	2,724,669	2,729,630	△ 4,961
	3400	청소사업비	1,248,734	1,113,988	134,746
4000	산업경제비	13,568,352	13,291,999	276,353	
	4100	농수산비	10,931,363	10,623,670	307,693
	4200	임업비	2,319,718	2,301,058	18,660
	4300	지역경제비	317,271	367,271	△ 50,000
5000	지역개발비	11,535,340	11,560,609	△ 25,269	
	5100	도시개발비	1,616,100	2,396,834	△ 780,734

[2회추경] 기능별 -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 감	
	5200	건설사업비	9,122,987	8,389,149	733,838
	5300	치수및하수사업비	694,272	674,064	20,208
	5400	교통관리비	101,981	100,562	1,419
6000	문화및체육비		1,541,945	1,519,025	22,920
	6100	문화예술진흥비	684,905	684,905	0
	6200	체육비	833,040	810,120	22,920
	6300	교육비	24,000	24,000	0
7000	민방위비		211,648	257,757	△ 46,109
	7100	민방위비	71,084	86,161	△ 15,077
	7200	소방비	140,564	171,596	△ 31,032
8000	지원및기타경비		1,321,127	1,233,549	87,578
	8100	지방채상환	588,473	588,473	0
	8200	제지출금	151,606	146,052	5,554
	8400	예비비	581,048	499,024	82,024
					..

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

(단위 : 천원)

과 목		사 항 별	예산액	전년도 (기정) 예산액	비 교 증(Δ) 감	사 업 개 요 및 경 비 내 역
장	관					
2210	공보관리		171,600	158,100	13,500	
	2211 공보관리		166,716	153,216	13,500	
		1. 공보행정	137,285	133,571	13,500	< 사업개요 > ○ 자산취득비 < 경비내역 > ○ 비디오프로젝트구입 15,000

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

(단위 : 천원)

과	목	사 항 별	예산액	전년도 (기정) 예산액	비 교 중(Δ) 감	사 업 개 요 및 경 비 내 역
장	관					
	3422 위생사업소운영		159,752	95,305	64,447	
		1. 사업소 운영	159,752	95,305	64,447	< 경비내역 > ○ 용수개발 (30,000 전액삭감)수정예산요구

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

(단위 : 천원)

과 목		사 항 별	예산액	전년도 (기정) 예산액	비 교 중(Δ) 감	사 업 개 요 및 경 비 내 역
장	관					
8410			581,048	499,024	82,024	
	8411		581,048	499,024	82,024	
		1. 예비비	581,048	499,024	82,024	< 경비내역 > ○ 일반예비비 82,024

書面質問 및 答辯書

질 문	이 치 옥 의원	답 변	평 창 군 수 (내 무 과 장)
회 의			
<p>< 질문요지 ></p> <p>1. 평창군 공무원 정·현원 현황('94. 9. 30 현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 직렬별, 기관별(실과소·읍면) - 일용직 현황(기관별, 기능별) - 결원대책 			
<p>< 답변요지 ></p> <p>☞ 이치옥 의원께서 서면 질문하신 평창군 공무원 정·현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 9. 30 현재 공무원 정원은 총 619명에 현원 595명으로 공로연수 3명을 제외하면 현재 27명이 결원입니다. ○ 직렬별·기관별 현황은 덧붙인 공무원 정·현원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번째 일용직 현황은 현재 총 120명으로 사무보조 48, 청사관리 및 청소원 55, 복지회관 관리 4, 주정차 단속 6, 기동처리 2, 의료보조 4, 급식 1 등이며 기관별 현황은 덧붙인 일용인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 결원내역은 행정·농업이 2, 기계 3, 토목 3, 의무 1, 의료기술 2, 약무 1, 보건 1, 별정(진료원) 1, 지도사 1, 기능직 12 등 총 27명입니다. ○ 결원 대부분이 기술직으로 매년 실시되는 시험에 응시자가 없거나, 응시 하더라도 불합격되어 충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95년 공채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 기능직 12명은 상수도 관리요원 5, 운전원 2, 오수처리장 관리 3, 사무보조 2명으로 '95년 상반기중 충원계획입니다. <p>· 현 결원에 대하여는 시·군 통합등으로 인하여 '95. 1. 31까지 인사동결로 충원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p>			

공무원 정·현원 현황

직렬명 기관명	합 계		행 정	세 무	진 산	기 계	농 업	임 업	축 산	의 무	간 호	의 료 기 술	보 건	환 경	토 목	건 축	지 적	통 신	별 정 직	기 능 직	고 용 직	지 도 직	비 고
	징 원	현 원																					
합 계	619	595	205	9	2	1	51	13	16	1	10	9	40	5	24	6	5	2	34	121	1	40	
본	소 계	212	207	99		2	1	9	13	8			4	5	15	3	5	2	5	35	1		
	기획실	12	12	11																1			
	문화공보실	8	9	6				1												1	1		
	내무과	31	31	18		2												2			9		
	사회진흥과	11	11	8											2							1	
	재무과	42	40	15														5				20	
	사회과	9	9	6										3									
	환경보호과	14	11	5										1	5								
	가정복지과	7	7	4																	3		
	산업과	13	13	5				8															
	지역경제과	14	12	8			1															3	
청	축산과	8	8						8														
	산림과	13	13						13														
	건설과	14	13	1											10						2		
	도시과	9	10	4											3	3							
	민방위과	7	8	8																			
	소 계	147	137	4						1	10	9	35							17	21		40
사 업 소	보건의료원	91	84	3						1	10	9	34							16	11		
	농촌지도소	48	46																	1	5		40
	위생사업소	8	7	1									1								5		
군 의 회	11	10	4																	1	5		

직렬별 기관별	합 계		행 정	세 무	전 산	기 계	농 업	임 업	축 산	의 무	간 호	의료 기술	보 건	환 경	토 목	건 축	지 적	통 신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지도직	비 고	
	정원	현원																						
읍 면	소 계	249	241	98	9		42		8				1		9	3			11	60				
	평창읍	44	42	20	1		5		1						2	1			2	10				
	미탄면	23	23	11	1		4		1						1					5				
	방림면	23	24	13	1		3		1				1		1					1	3			
	대화면	30	30	12	1		5		1						1					2	8			
	봉평면	30	29	13	1		5		1						1					2	6			
	용평면	26	25	8	1		7		1						1					1	6			
	진부면	42	38	10	1		8		1						1	1				2	14			
	도암면	31	30	11	2		5		1						1	1				1	8			

일용인부현황 ('94년 9월말 현재)

구분 기관별	계	기 능 별						
		사무보조	청소원	북지회관관리	주정차요원	기동처리	의료보조	급 식
합 계	120	48	55	4	6	2	4	1
소 계	52	28	11		6	2	4	1
기 획 실	2	2						
문화공보실	2	2						
내 무 과	4	2				2		
사회진흥과	2	2						
재 무 과	13	6	7					
사 회 과	1	1						
환경보호과	1	1						
가정복지과	1	1						
산 업 과	1	1						
지역경제과	7	1			6			
축 산 과	1	1						
산 림 과	1	1						
건 설 과	4	4						
도 시 과	1	1						
민방위과	1	1						
보건의료원	7		2				4	1
농촌지도소	2	1	1					
의 회	1		1					
소 계	68	20	44	4				
평 창 읍	15	2	13					
미 탄 면	5	2	2					
방 립 면	6	3	2	2				
대 화 면	10	3	7					
봉 평 면	7	3	3	1				
용 평 면	6	2	3	1				
진 부 면	10	3	7					
도 암 면	9	2	7					